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1. 12. 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어르신장애인과장)
- 제출일자: 2021. 11. 19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12. 3.)

2. 개정이유

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될 두류은빛복지관이 11월 19일 준공 예정임에 따라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두류은빛복지관의 명칭, 소재지를 신설·명시함(안 제2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될 두류은빛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제1항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